

■ 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9호의3서식] <개정 2017. 6. 21.>
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

수임인	성명	전화번호
	생년월일(외국인등록번호)	위임인과의 관계
	주소	
위임인	성명	전화번호
	생년월일(외국인등록번호)	
	주소	

위임인은 「의료법」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「진료기록 등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」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 권한을 상기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.

四
四
四

위임인

(자필서명)
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

확인자 (신청자)	성명	생년월일 (외국인등록번호)
	환자와의 관계	
환자	성명	생년월일 (외국인등록번호)
확인사항	상기 환자의 직계 존속·비속 및 환자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부존재	

본인(확인자)은 「의료법」 제21조 제3항 및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13조의3의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

상기 환자()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본인(확인자)

(자필서명)

유의사항

상기 확인서는 아래의 경우에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자인 환자의 형제·자매가 작성합니다.

-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13조의3 제1항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
-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13조의3 제3항 [별표 2의2]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